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35
----------	------

2020년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0년 8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라. 상정결과 :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04년 개정 이래 변동 없는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적절한 이용가치를 재정립하고,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부과기준 관련 조문의 정비를 통해 해석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그 밖에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체 시립체육시설 중 9개 시설 및 29개 세부시설의 전용사용료를 조정함(안 별표3)
- 별표3의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설정함.
 - 1) 부과기준 단위를 현행 '1일당, 주간'에서 '평일,주간'으로 수정함
 - 2) 비고란의 가산기준 중 사용시간대별로 토요일·공휴일 주간은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평일·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은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가산하도록 상세히 구분함.
-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16.3.)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을 통해 체육경기를 주최(주관)하는 협회(단체)에서 국민생활체육회를 삭제함(안 제5조제3항제1호).
-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21.1.21.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5.28.~6.17.)결과: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의이용가치를 재정립하고,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부과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며, 그 밖에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나. 세부 내용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조정

- 시립체육시설 중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서남권돔구장,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 구의야구공원, 신월야구공원, 창동문화체육센터 총 9개 대상시설 및 29개 세부시설의 전용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 서울시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는 2004년 이래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 제345호, 2017.8.7.)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산정하여 [별표3]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주체에 따라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잠실운동장,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신월야구공원, 창동문화센터를, 서울시설공단이 고척스카이돔(서남권돔구장),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을 대상으로 전문용역기관의 원가조사 용역을 진행함.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2004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물가 인상률 누계 25.77%의 인상이 필요하나, 전용사용료를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이용자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최근 3개년의 누적된 소비자물가인상률 4.74%만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년도별 소비자 물가인상률〉

년도	지수	인상률
2017	102.680	1.26%
2018	104.370	1.65%
2019	106.280	1.83%
누적		4.74%

다만 인상률 적용시 사용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잠실야구장(LG스포츠, 두산스포츠), 효창운동장(서울특별시축구협회), 목동빙상장((주)와이키키 신사점), 고척체육센터(서울특별시체육회)는 예외로 하고 있음.

(2) 전용사용료 부과기준 조문의 정비

- 먼저 [별표3]의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현행 ‘1일당, 주간’에서 ‘평일, 주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일당’이라는 표현은 실제 현장에서 24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수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비고란의 가산기준을 △토요일·공휴일 주간사용과 △평일·토요일·공휴일의 조기·야간사용으로 구분함에 따라 관련 해석이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됨.

〈전용사용료 부과기준〉

현	행	개	정	안
---	---	---	---	---

<p>비교</p> <p>1. <u>토요일·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u>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p> <p>2~9. (생략)</p>	<p>비교</p> <p>1. <u>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u>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p> <p>2~9. (현행과 같음)</p>
--	---

(3) 기타사항

- 안 제5조제3항제1호에 시립체육시설에서 체육경기를 주최·주관하는 협·단체에서 “국민생활체육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2016년 3월 통합된 것에 따른 합당한 조치로 보임.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단체는 제33조(통합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로 정의하고 있어 관련 용어에 통일이 필요한 바,

체육경기를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종목행사”로 구분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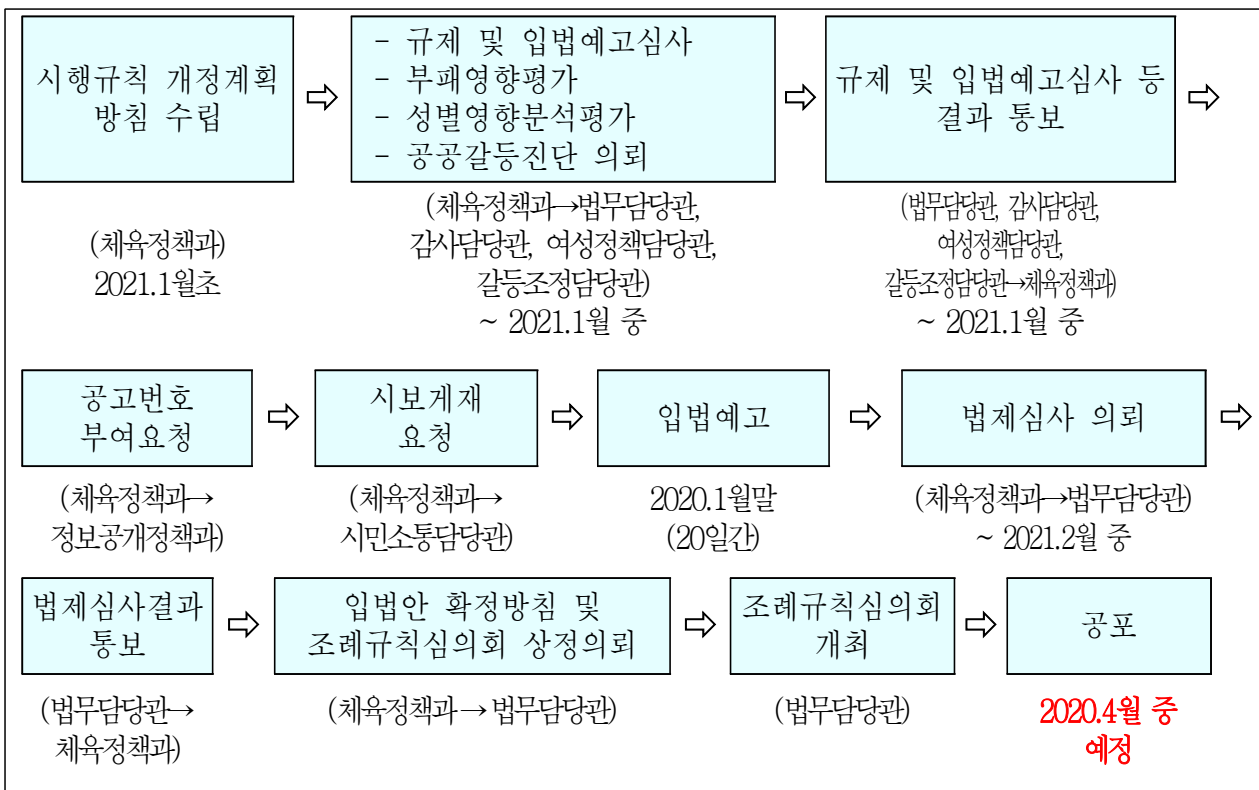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목이 ‘통합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개정(2020. 12. 8.)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잦은 개정을 지양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대한체육

(4) 부칙규정

-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을 2021년 1월 21일로 정하고, 1월 20일까지 사용허가를 받도록 적용례를 두었으나,

관련 절차가 지연(상임위 상정 9월 2일→12월 17일)되었으며 조례개정 이후 전용사용료 관련 시행규칙 개정까지 수 일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허가를 받고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다. 종합의견

- 공공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소비자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인상할 필요성은 적으나 2004년 이후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던 바, 최근 3개년의 소비자 물가인상 누적률만큼 소폭 인상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사용료 산정근거가 되는 원가계산 용역 등의 분석은 2019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상당기간 중지되었고, 향후 시설이용이 정상화되더라도 사용료 인상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20년 서남권돔구장(고척스카이돔)의 경우 서울의 집중호우로 관중석 쪽 누수가 발생하여 빗물이 경기장에 유입되는 등 신설 체육시설에도 계속된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체육시설(잠실주경기장 등)의 경우 극심한 노후화로 현 상태에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시민의 정서에 합당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때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은 시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고 시립체육시설의 적정한 이용가치 재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박지혜	02-2180-811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35
----------	---------

제안연월일 : 2020년 12월 17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교육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수정하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까지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의 적용일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5조제3항제1호 “서울시교육청”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수정함.
- 안 부칙 제1조와 제2조 적용일을 수정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제1호 중 “서울시교육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1월 21일”을 “5월 1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1월 20일”을 “4월 30일”로 하며 “1월 21일”을 “5월 1일”로 한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의 “국민생활체육회, 서울시교육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행사 다만,”을 “행사. 다만,”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2021년 5월 1일 이후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 육 경 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157,300	181,000~235,300	423,000~549,9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94,900	110,000~143,000	244,000~317,200
	제1·2 수영장	09 : 00 - 18 : 00	804,000~1,045,200	1,206,000~1,567,800	1,548,000~2,012,400
		09 : 00 - 12 : 00	268,000~348,400	402,000~522,600	516,000~670,800
		12 : 00 - 18 : 00	680,000~884,000	1,020,000~1,326,000	1,341,000~1,743,300
	야구장		221,000~287,300	331,000~430,300	530,000~689,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670,800	774,000~1,006,200	1,252,000~1,627,6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8,000~192,400	222,000~288,600	355,000~461,500
	체조관		41,000~53,300	62,000~80,600	138,000~179,4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58,500		
풋살구장(2시간)		32,000~41,6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571,000~742,300	857,000~1,114,100	1,267,000~1,647,100
	보조경기장(2시간)		197,000~256,100	295,000~383,500	472,000~613,6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715,000~929,500		
	VIP룸(")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광장(4시간, m ² 당)		210~27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113,800
		A2			77,800 ~101,100
A3		63,400 ~82,400			
A4		61,800 ~80,300			
A5		45,600 ~59,200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24,000~291,200	336,000~436,800	538,000~699,400
	축구장	1일	155,000~201,500	232,000~301,600	372,000~483,600
		2시간	51,000~66,300	77,000~100,100	170,000~221,000
	수영장	09:00-18:00	489,000~635,700	735,000~955,500	942,000~1,224,600

		09:00-12:00	163,000~211,900	245,000~318,500	314,000~408,200		
		12:00-18:00	413,000~536,900	621,000~807,300	816,000~1,060,800		
	보행광장(4시간, m ² 당)		200~26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볼펜(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1일	125,000~162,500	188,000~244,400	302,000~392,600		
		2시간	50,000~65,000	75,000~97,500			
	야구장	1일	111,000~144,300	167,000~217,100	466,000~605,800		
		3시간	66,000~85,800	100,000~130,000			
	실내빙상장		102,000~132,600 (1시간)	153,000~198,900 (1시간)	7,331,000~9,530,300	110,000 ~143,000 (1시간)	
	다목적구장		89,000~115,700(1면, 2시간)				
효창운동장	1일	125,000~162,500	187,000~243,100	300,000~390,000			
	2시간	50,000~65,000	74,000~96,200				
장충체육관	체육관	129,000~167,700	193,000~250,900	451,000~586,3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33,500	60,000~78,000	79,800~103,700			
	다목적실(3시간)	12,000~15,600	31,200~40,600	37,200~48,400			
독섬승마훈련원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창동문화 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224,900				
산악문화 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205,400				
	다목적실		352,000~457,600				
	시청각실		232,000~301,6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32,500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시설 내 집기 대여료와 데크·광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9.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40,000원~52,000원으로 한다.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사용허가) ①·② (생략)</p> <p>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u>국민생활체육회</u>, <u>서울시교육청</u>(산하 지역교육청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u>행사</u> 다만, 시장과 협의 없이 프로구단이 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제5호에 따른 일반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p> <p>2. ~ 5. (생략)</p>	<p>제5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 <u>서울특별시교육청</u>----- ----- ----- ----- ----- ----- ----- ----- ----- ----- <u>행사. 다만,</u> ----- ----- ----- -----.</p> <p>2. ~ 5. (현행과 같음)</p>